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이정문・신동근・김철민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도종환 · 조승래 · 서영교

변재일 · 서영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바,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 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 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 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료급 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 사,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제12조의 2, 제18조, 제29조의3,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급권자에게"를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을 "사용, 신청 및 교부의 절차나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도·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하게 이를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

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제23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해당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의료급여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2. 의료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공표심의위원회는 공표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및 내용을 알려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급여비용"을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군수·	제8조(의료급여증) ①
구청장은 <u>수급권자에게</u> 의료급	<u>수급권자가 신청하는</u>
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u>경우</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
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	
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4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u>사용</u> 등에 필요한 사항은	- <u>사용, 신청 및 교부의 절차나</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방법</u> .
<u><신 설></u>	⑤ 누구든지 제1항의 의료급여
	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
	여서는 아니 되고, 양도·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하게 이를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u>아니 된다.</u>
<u><신 설></u>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생 략)

<신 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 (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수 있다.

-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 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 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수급권의 보호)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12조의2에 따라 요양비등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 ③ (생략) <신 설>

④·⑤ (생 략)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 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 급여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 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의료 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 다)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 된 경우 해당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받 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 다.
- ⑤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8) -----제6항-

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생 략)

⑨ 제8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제9항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28조 또 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제2항의 의료급여공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의료급 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의료급여기 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 2. 의료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 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 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 ③ 공표심의위원회는 공표 심 의 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및 내용을 알려 대상자가 소명자 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 고,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하 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 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

도 및 시·군·구를 지도·감독하 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 는 사람에게 그 의료급여의 내 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 하게 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① <u>시장·</u> <u>군수·구청장</u>,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 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 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 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시장·군수·구청장, 급여비용시급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 <u>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u>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① <u>시·도</u> <u>지사, 시장·군수·구청장</u>
 ② (현행과 같음)
③

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 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
②・③ (현행과 같음)